

4. 都市計劃法改正法律(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5-270號 1995. 9. 7

1. 개정이유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도시환경의 변화와 생활권확대로 인한 도시의 광역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중앙과 지방에 배분하며, 그동안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위임 또는 재위임에 의하여 행사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현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함. 다만, 국가적 차원의 도시계획,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계획 및 구역등의 지정권한과 지역간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조정지시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 나. 도시와 농촌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생활권단위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하고, 도시내 토지용도분류체계를 구역·지정 및 지구의 순서로 체계화되며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한 성격의 구역·지역·지구등을 통폐합함.
 - (1) 구역중 특정시설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상세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 및 광역계획구역은 폐지하고 시가화예정구역을 신설
 - (2) 지역중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폐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생산농림지역으

로 함.

- (3) 지구중 특수시설지구·유통시설지구(폐지되는 유통상업지역이 명칭변경)·고도 이용지구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신설가능

다. 도시계획에 대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한 상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권을 부여함.

라. 민간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도로·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시장·군수등과 합의하면 이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간 협의제도」를 도입하며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함.

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도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내용 및 행위제한내용등을 공고한 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로·쓰레기처리장등 현재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만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없이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처리장등 여러 시·도에 걸치는 광역시설의 설치·이용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도차원의 계획의 실현등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을 부여함.

아. 도시의 적정한 기능분배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내 토지를 구역·지역·지구로 구분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할 건축법의 일부조항(지역별 허용건축물의 종류·용적률·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수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재산권행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주택도시국장, 전화 503-7322, 504-91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